

유의사항

1. 지방세액 산출근거

과세근거	▪ 「지방세법」 제23조제2호, 제24조제2호 및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
납세의무자	▪ 「지방세법」 제24조제2호에 따른 면허를 받는 자(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)
납부지연가산세	▪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,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.66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(최대 60개월까지)됩니다. ※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2.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(50일 이내)이 고지되며,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.

3.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(시·군세의 경우에는 시장·군수에게, 시·도세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)에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※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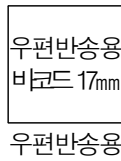
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보내는 사람



과세번호	
담당자	문의처

받는 사람



과 세 근 거

납 부 장 소
전국 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

납부지연가산세
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%가 부과되고,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 때마다(최대 60개월까지) 그 지방세액의 0.66%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
※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의 3%)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 × 0.66% × 경과월 수)

자동계좌이체 납부 통지서

귀하께서 납부하실 지방세는 아래 신청하신 거래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어 납부됩니다.

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:
예 금 주:
출 금 계 좌:
성 명:



※ 자동이체일은 년 월 일 입니다.

- 납부기한 마감일 전에 예금 잔액을 확인하십시오. 예금 잔액이 부족하면 자동이체납부가 되지 않으므로 관할 시·군·구에 확인 후 직접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지방세 납부명세는 예금통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귀하께서는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하셨으므로 이 고지서로 지방세 납부장소(전국 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)에서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.

시·군	납세고지서 (분)(납세자용)											
납세번호	과세기관	검	회계	과목	세목	연도	월	구분	읍면동	과세번호	검	
납 세 자 주 소												
납세자번호:												
과세대상:												
세 목	납부할 세액	부과내역(과세표준)					세율	납부기한				
								까지				
								담당자				
								문의처				
합 계												
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		
년 월 일												
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												
※ 지방세 납부결과 고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												

유의사항

1. 지방세액 산출근거

과세근거	▪ 「지방세법」 제23조제2호, 제24조제2호 및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
납세의무자	▪ 「지방세법」 제24조제2호에 따른 면허를 받는 자(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)
납부지연가산세	▪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,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.66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(최대 60개월까지)됩니다. ※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2.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(50일 이내)이 고지되며,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.

3.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(시·군세의 경우에는 시장·군수에게, 시·도세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)에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※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